

손해배상(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공1997상, 158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공1998상, 61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공1999상, 538)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2]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사례

[1]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2]민법 제750조

【찬조파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011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 적용 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확결

【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장부 평등 정의

[1]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공1997하, 3880) /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공1996상, 982)

휴게기간에 발생한 재해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심판법 제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6다60509 판결, (공1995하, 225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공1996하, 2886) / [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 1409),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337 판결(공1993하, 2648),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공1994하, 3281) 